오늘부터! MG손해보험

합의서 (대인용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포함)

갑 피해자	주 소		성 명	
을 기명피보험자 (타차소유자)	주 소		성 명	
을 운전자	주 소		성 명	
공동불법행위자	주 소		성 명	

_____년_____월_____일_____시_____분경 _____에서 을 소유 _____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 MG손해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 (대인배상 I 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공동불법행위 사고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포함)을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또한 '가해자 의 대리인인 '_____ 보험회사 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 및 보험금 지급항목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

수령금액 금 원정 (₩)

내 용 (합 의 조 건)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항목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	
간병비		가정간호비		장례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적극손해 (기존 치료관계비)					

*동일 항목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년 월 일

위 피 해 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	인 (서명)	위 가해자 또는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위 보험금을 아래의 은행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기과실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부모 ,배우자 ,자녀포함)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 보험금 지급 종결 시 ,최종 보험금 지급내역 등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드립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 송금의뢰인은 합의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확인자 성명 : 인 (서명) 연락처 :

위 임 장

아래 사람들은 _____년_____월_____일_____시_____분경_____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관계 :_____)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를 친족대표로 선임하여 위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 및 영수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

주 소	성 명	피보험자와의 관계	연 락 처	인감날인

MG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항목별 안내문
('17.3.1이전 계약)

부상보험금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급 : 200만원 ~ 14급 : 15만원)
적극손해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휴업손해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0% 보상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기타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후유장애보험금	
위자료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근거하여 보상 50% 이상 :상실률 및 연령에 따라 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적용)적으로 보상 50% 미만 :상실률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정액 보상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x노동능력상실률 x(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가정간호비	·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 '중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

사망보험금	
위자료	· 19세 이상 60세 미만 :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00만원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x(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을 공제
장례비	· 300만원 정액 보상

과실상계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 보상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항목별 안내문
('17.3.1시행 약관 기준)

부상보험금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급 : 200만원 ~ 14급 : 15만원)
적극손해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보상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휴업손해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간병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 정해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여 보상 ·간병비용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기타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후유장애보험금	
위자료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근거하여 보상 50% 이상 : 상실률 및 연령에 따라 비율(노동능력상실률 적용)적으로 보상 50% 미만 : 상실률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정액 보상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가정간호비	·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중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

사망보험금	
위자료	·연령에 따른 정액 보상 (60세 미만 : 8,000만원 / 60세 이상 : 5,000만원)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생활비는 월평균현실소득액의 1/3을 공제
장례비	· 500만원 정액 보상

과실상계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 보상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을 보상